

# 무시험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Education and Policy Tasks for Licensing Cosmetologists*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내는 국가기술자격시험과 함께 무시험 미용사 면허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무시험 면허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미용사 양성을 위한 종전의 교육제도 규정이 삭제되고 학교 측의 자율교육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은 다양화 되었으며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나, 교육기관별로, 교과목, 교육이수시간이 상이하여 해당종업자들에게 대한 객관적인 전문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미용사 제도와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서론

미용업은 다른 공중위생업종과는 달리 면허 제도를 두고 있는 업종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취득 방식은 관련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무시험 면허 취득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이 있다.

1999년 2월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미용사 양성을 위한 종전의 교육제도 규정이 삭제되고 학교 측의 자율교육에 맡겨짐으로서 일률적인 의무교육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학교 급별 통일된 필수 이수과목과 이수시간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면허의 경우, 미용업 분야가 헤어, 피부 등 분야별로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2008년 6월 이후 미용사(일반)면허와 미용사(피부)면허로 분리 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이처럼 전문 분야별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발급받은 면허는 일반 미용과 피부미용의 구분 없이 두 분야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자와는 달리 무시험 면허 취득자의 전문성 검증절차는 부재한 상황으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미용사 제도와 무시험 면허 취득을 위한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미용사 면허제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취득 방식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방식과 관련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무시험 면허 취득 방식이 있다. 면허자격 조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무시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면허취득의 경우 2008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미용사(일반)면허와 미용사(피부)면허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미용사 면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면허의 종류는 미용사 면허, 미용사(일반) 면허, 미용

사(피부) 면허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 2>와 같이 업무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미용사(일반) 면허 소지자는 헤어미용을 포함하여 손발톱, 눈썹손질, 화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용사(피부) 면허 소지자는 눈썹손질을 포함한 피부미용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헤어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서도 미용사(일반), 또는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미용학과 졸업을 한 경우에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즉,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한 면허취득의 경우 업무영역이 세분화 된 반면 관련 교육이수를 통한 면허취득의 경우 업무범위의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다.

표 1.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 자격 조건

면허자격 조건	내 용	비 고
미용학과 졸업 (이수, 학위자)	-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 학교의 미용 학과 졸업자 - 고등기술학교 이용 또는 미용 과정 이수자 (1년 이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 9조에 따라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미용사 면허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일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미용사 면허 미용사(일반) 면허 미용사(피부) 면허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2009).

**표 2.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의 업무 범위**

구분		면허종류	업무범위	비고
미용학과 졸업(이수, 학위)자		미용사	- 헤어( 파마, 커트 등) - 손발톱 - 얼굴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 눈썹손질	
국가기술자격자	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	미용사	- 헤어( 파마, 커트 등) - 손발톱 - 얼굴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 눈썹손질	'07.12.31 이전 자격증 취득자
	미용기능사 (일반)	미용사 (일반)	- 헤어( 파마, 커트 등) - 손발톱 - 얼굴손질 및 화장 - 눈썹손질	'08년 2월 자격자 첫 배출
	미용기능사 (피부)	미용사 (피부)	- 피부미용, 눈썹손질	'08년 12월 자격자 첫 배출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2009).

### 3. 교육 현황

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의 <표 3>과 같다<sup>1)</sup>.

#### 1) 교육기관

초기의 미용교육은 고등기술학교와 미용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7년 교육부 7차 교육과정에 가사·실업 관련교과에 실업고등학교의 미용교과가 고등학교 교육의 한분야로 신설되면서 고등학교가 미용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점차로 대학교육에서 미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무시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용 관련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및 직업학교를 포함하여 총 200여 곳

**표 3. 미용 관련 교육기관**

구분	교육기관 수
고등기술학교	4
고등학교	24
산업학교	5
고등학교학력인정	14
2년제 대학	97
4년제 대학	26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13
학점은행제 (학사)	21
계	20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 자료 재정리(2009), 평생교육진흥원 자료 재정리(2009).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20개 이상의 평가인정과목을 개설한 기관만 포함시킴.

고등기술학교는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교로 평생 교육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1년제 과정, 3년제 과정, 전공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용 관련 교육은 모두 1년제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학력인정은 되지 않지만 미용사 면허는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 고등학교 과정으로 미용과가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2개의 전문계고와, 2개의 일반계고(통합형)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규 고등학교 과정 이외에도 산업학교에서 미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학교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탁받아 1년 특별과정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력인정 학교 중 14개 학교가 미용 관련 학과를 개설 운영 중이며,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고등학교와는 구분지어 관리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991년 영동전문대학에 미용예술과, 동주여자전문대학에 피부미용과가 최초로 신설되었고, 2009년 7월 현재에는 97개 전문대학에서 미용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4년제 대학교는 1999년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를 시초로 2008년 12월 현재 총 26개 대학교에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밖에 2008년부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산업예술전문학사, 미용

전공), 미용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 무시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전국적으로 학사(미용학사)과정의 교과를 1과목이상 개설해 놓은 기관은 148개, 전문학사 과정의 교과를 1과목 이상 개설해 놓은 기관은 124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20개 이상의 미용관련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문학사 수준 교과목 개설기관 13개와 학사 수준 교과목 개설기관 21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교육과정 운영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의 지정기준”으로 교과목 및 수업시간을 고등기술학교와 전문대학으로 나누어 <표 4>와 같이 규정 하였다.

위생법규, 생리해부학, 소독법, 전염병학, 공중보건학, 피부과학 교과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미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은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각각 148시간과 672시간, 전문대학의 경우 각각 624시간과 672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고등기술학교의 총 수업시간은 1,260시간이상, 전문대학의 총 수업시간은 1,472시간이상으로 고등기술학교 보다 많은 이론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는 의무 교과목 및 수업시간에 대한 규정이 폐지가 되어 미용 관련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학

2) 2009 전문대학 모집 단위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화장품학과 등, 미용관련분야이긴 하나 미용사 면허발급이 안 되는 과가 개설된 학교는 제외하였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전문학사과정과 미용학사 과정은 각각 1998년도, 2001년도에 개설되었음.

**표 4. 공중위생법 상 이·미용사 의무 교과목 및 수업시간**

교과목	공중위생법 (1994~1999)		비고
	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위생법규	34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해당규정이 폐지됨
생리해부학	34 시간 이상	48 시간 이상	
소독법	34 시간 이상	32 시간 이상	
전염병학			
공중보건학	52 시간 이상	32 시간 이상	
피부과학	34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미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	이론: 148 시간 실습: 672 시간	이론: 624 시간 (교양교직 포함) 실습: 672 시간	
교육법에 의한 보통교과	252 시간		
합계	1260 시간 이상	1472 시간 이상	

자료: 법제처, 공중위생법 내용 재정리

교 당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학교 급별 미용관련 교육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교과의 이수기준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다음의 <표 5>는 학교 급별 전문 교과 이수기준 현황을 나타낸다.

고등기술학교 1년제 과정은 최저 이수 단위가 66단위<sup>4)</sup>,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80단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학교의 경우 최저 58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학사, 학사의 학점 이수기

**표 5. 학교 급별 전문교과 이수기준 현황**

구분	전문교과 이수기준	비고
고등기술학교	66단위	고등교육법 적용
고등학교	80단위	
산업학교	58단위	
고등학교학력인정	58단위	평생교육법 적용
2년제 대학	-	학교 자율에 맡겨짐
4년제 대학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45학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적용
학점은행제 (학사)	60학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 자료 재정리(2009), 평생교육진흥원 자료 재정리(2009).

4) 1 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함.

준은 모두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총 이수학점은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력인정 학점기준을 적용하여 전문학사 80학점, 학사 140학점을 자율적으로 따르고 있다. 총 이수학점 전공 교과 및 학점의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를 살펴해보았을 때 전공학점은 각각 최소 70학점내외, 90학점 내외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의 경우, 해당 학위에 대한 전공이수학점 기준이 전문학사 45학점, 학사 60학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용학과 졸업(이수, 학위)자에게 부여되는 미용사 면허 취득자의 교육시간은 학교 급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 전문교과 이

수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문교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실제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다른 분야를 전문교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다음의 <표 6>은 학교 급별 세부전공분야 교과 운영 사례를 나타낸다.

<표 6>에 따르면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미용사(피부)자격이 분리되기 이전 상황을 바탕으로 헤어미용 위주의 교과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피부미용 분야도 헤어미용 분야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사례로 제시된 경우와 같이 종합미용 개념을 적용하여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년제 대학의 약 35%는 세부전공에 따라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표 6. 학교 급별 미용관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sup>5)</sup>

학교 급별	교육기관	분야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합계
고등기술학교	A	30단위	3단위	3단위	3단위	39단위
	B	33단위	3단위	2단위	3단위	41단위
	C	22단위	8단위	4단위	3단위	37단위
고등학교	D	18단위	20단위	18단위 <sup>1)</sup>	8단위 <sup>1)</sup>	64단위 <sup>1)</sup>
	E	36단위	26단위	12단위	12단위	86단위
	F	22단위	22단위	10단위	12단위	66단위
2년제 대학	G	14학점	17학점	12학점	2학점	45학점
	H	14학점	14학점	12학점	8학점	48학점

주: 1) 선택교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포함하며, 실제 이수단위는 이보다 작을 수 있음.

5) 본 표에 제시된 단위 수 및 학점 수의 경우 공중위생학, 소독학 등의 공통교과목, 미용사의 법적 업무범위 이외의 내용을 담은 교과목은 제외한 것임.

등으로 교과과정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6)</sup>. 국가기술자격이 분리됨에 따른 해당분야(헤어미용 또는 피부미용)의 심화교육을 목적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타 세부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교과과 운영되지 않아 미용사 업무범위 전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사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

#### 4. 결론 및 정책제언

초기 무시험 미용사 면허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관련교육기관이 고등기술학교로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이수교과목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어 통일된 교육과정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관련교육과정의 운영을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김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은 다양화 되었으며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으나, 교육기관별로, 교과목, 교육이수시간이 상이하어 해당종업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업무범위에 따라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되어 실시되는 상황에 무시험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내용도 업무범위에 따른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 분야별 전공세분화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교과과정이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는 미용사 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코디네이션 등의 분야와 접목시켜 다양한 형태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미용교육의 전문성을 검증할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실한 교육이수자들에게 미용사 면허를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시험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분화된 교육이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급별 통일된 필수 이수과목과 이수시간의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이론 및 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의 경우 미용사 면허(자격)는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에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내와 같이 무시험 자격제도(Certificate)를 운영하는 호주의 경우 여러 단계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각 자격기준에 대한 필수교육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무시험 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기준이 마련되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해당교과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으로서 무시험 면허취득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본문

6) 『이·미용 관련 학교 학과 교과목 이수규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외(2009) 의 조사결과임.